

부산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나598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나5986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가단536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0. 10. 14.

판결 선고 2020. 11. 11.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가단536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 중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가사 원고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거나 원고가 그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오영두

판사김석수

판사류승우